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553호

나. 제 안 자 : 권수정의원 외 27명

다. 제안일자 : 2020년 5월 25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2. 주 문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와 같이 대형 중대재해가 유사형태로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함.

3. 제안이유

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가 화재사고로 사망했으며,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공사 중 화재로 40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유사한 사고원인과 사고유형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태임.

다.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은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기인한 산업재해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과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미비에 따른 것임.

라. 이에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명확히 하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4. 이송처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건의안의 개요

- 건의안은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임.

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

-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대형 산업재해 사고는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0명(사고 사망자 수 : 855명, 질병 사망자 수 : 1,165명)¹⁾으로, 여전히 하루 6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20여년간 유지해오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
- 그러나 안전관리의 책임이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아닌 하위 직급의 종사자에게 분산되어 있어 중대 재해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어렵고,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노동자 사망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은 처벌수준이 미약하고, 벌금액도 기업 규모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 형태는 원청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³⁾.
- 실제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6,144건 중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35건 (0.57%)으로, 채 1%가 되지 않음⁴⁾.

1)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원청의 처벌수준 또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상향시켰음(2020.1.16. 시행).

4) 경향신문,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행은 1%도 안돼” (2019.10.1.)

- 그 결과 기업의 안전불감 문화와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산업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속도와 효율이 안전보다 중시 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기업 스스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을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안전관리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에 건의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위험 업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 된다 하겠음.
- 다만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형법」 등의 개별 법률에 중대재해 유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 추후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필요해 보임.
-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0.6.11.).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